

사회통합프로그램 「지자체 연계 프로그램」 운영 알림

법무부 이민통합과

1 추진 배경

- 중앙과 지방 정부의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효과적인 이민자 사회통합 실현

2 운영 계획

- (내용) 지자체의 이민자 대상 문화, 교육, 체험프로그램 중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우수 프로그램을 사회통합프로그램 「지자체 연계 프로그램」으로 지정
- (절차) 각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우수 프로그램을 법무부에 연계신청, 법무부는 선별심사 후 연계 프로그램으로 지정 및 홍보
- (참여) 이민자는 개인 또는 단체로 연계 프로그램 참여 가능
※ 연계교육 주관 기관에서는 참가자별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수료증(붙임2) 확인 이행
- (혜택) 연계 프로그램 참여 실적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출석시간으로 인정

3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지정 현황

- 16개 지자체 총 24개 프로그램 선정 (붙임1)

4 참여 및 시간인정 절차

- (참여신청) 연계 프로그램별 참여방법*에 따라 개인 또는 운영기관 단체로 참여 신청

* 목록 및 참여방법 등은 사회통합정보망(www.socinet.go.kr)- 「알림마당」- 「민원서식」 참조

- (신청접수) 연계 프로그램 시행기관에서 신청 접수
- (참여·수료확인)

- 참여자가 '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수료 확인서' 양식 출력 및 내용 기재하여 참여

- 연계 프로그램 시행기관에서 수료 확인서에 확인 이행

- (수료확인서 제출) 참여자는 수료 확인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→ 운영기관은 출석시간 인정대상 수업 종료 전 거점운영기관에 제출
- (시간입력) 거점운영기관장은 연계 프로그램 참여 당시 진행중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출석시간*으로 입력 및 통계 유지

* 최대 4시간 범위 내에서 연계 프로그램 참여한 실적 시간만큼 출석시간으로 인정

5 행정 사항

- (시행일) '19. 4. 12.(금)